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5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앙이원영 · 김승남

한준호 · 박용진 · 이용빈

이원택 · 민홍철 · 윤관석

맹성규 · 전혜숙 · 양정숙

홍영표 · 오영환 · 이인영

박완주 · 남인순 · 신정훈

윤준병・박 정・박성준

윤영덕·김경만·박상혁

정필모 • 전해철 • 강득구

이용선 의원(2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 런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은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 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(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3항 본문 중 "72시간"을 "168시간"으로 한다. 제15조제2항 전단 중 "72시간"을 "168시간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	제12조(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
치) ①・② (생 략)	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	③
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<u>72</u>	<u>168</u>
<u>시간</u> 을 넘을 수 없다. 다만, 검	<u>시간</u>
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	
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	
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	
지 연장된다.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응급조치·긴급임시조치 후	제15조(응급조치·긴급임시조치 후
임시조치의 청구) ① (생 략)	임시조치의 청구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	②
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	
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	
72시간 이내에, 긴급임시조치가	168시간
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	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	
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	
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	
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	
를 첨부하여야 한다.	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